

1. 개정이유

최근 캠핑인구의 증가로 해수욕장 안에 장기간 텐트, 캠핑카 등을 무단으로 설치 또는 방치함에 따른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해수욕장 관리청이 방치된 물건등을 직접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「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이 일부개정(법률 제19143호, 2022.12.27. 공포, 2023.6.28. 시행)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해수욕장 관리청이 직접 제거할 물건등의 종류를 명시하고,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물건등을 직접 제거할 수 있는 긴급한 경우 명시(안 제9조 신설)

관리청이 반복·상습적으로 물건등을 설치 또는 방치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, 기상악화·자연재해 등으로 안전상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될 때, 그 밖에 관리청이 물건등이 해수욕장의 원활한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을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 물건등을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함

나. 제거된 물건등의 관리(안 제9조의2 신설)

제거된 물건 등의 목록, 제거사실 및 안내문, 반환신청서 등 필요한 서식을 별지에 신설함

다. 규정 신설에 따른 기존 조문번호 정비(현행 제9조의2→ 안 9조의 3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관계부처 협의 예정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예정

3) 행정규제 : 규제심사 예정

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(물건등의 제거 등 요건) 법 제23조의2제2항에서 “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”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관리청이 반복·상습적으로 물건등을 무단으로 설치 또는 방치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
2. 기상악화·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해수욕장에 무단으로 설치 또는 방치된 물건등이 안전상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
3. 그 밖에 관리청이 물건등이 해수욕장의 원활한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을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

제9조의2를 제9조의3으로 하고,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2(제거된 물건등의 관리) ① 영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제거된 물건등의 목록 등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.

② 영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제거사실 및 안내문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.

③ 영 제10조의2제5항에 따른 반환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.
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■ 해수욕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1호서식]

제거된 물건 등 내역

소유자 또는 관리인 :

[illegible]210mm×297mm[백상지(80g/m²) 또는 중질지(80g/m²)]

제거사실 및 안내문

1. 제거장소:
2. 근거법령:
3. 제거사유:
4. 보관장소:
5. 제거 및 보관물건:
6. 보관물건 반환 안내:
7. 연락처:

「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의2,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제2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물건등의 제거사실 및 안내문을 통보합니다.

년 월 일

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)

직인

반환신청서		
신청인	성명	주민등록번호
	주소	
품명	수량	
형태		
「해수욕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0조의2제5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위 물건 등의 반환을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(자치구) 귀하		

물건 등 인수증		
인수인	성명	주민등록번호
	주소	
품명	수량	
형태		
위의 물건 등을 인수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(자치구) 귀하		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u><신 설></u>	제9조(물건등의 제거 등 요건) 법 제23조의2제2항에서 “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”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1. 관리청이 반복·상습적으로 물건등을 무단으로 설치 또는 방치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2. 기상악화·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해수욕장에 무단으로 설치 또는 방치된 물건등이 안전상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. 그 밖에 관리청이 물건등이 해수욕장의 원활한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을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
제9조의2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9조의3 (현행 제9조의2와 같음) 제9조의2(제거된 물건등의 관리) ① 영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

제거된 물건등의 목록 등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.

② 영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제거사실 및 안내문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.

③ 영 제10조의2제5항에 따른 반환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.